

#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

1997년 12월  
기획총무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1997년 11월 28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1997년 11월 28일
- 다. 상정일자 : 제71회 서구의회(정기회) 회기중  
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(1997년 12월 3일 상정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< 제안설명자 :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>

### 가. 제안사유

- 광주광역시 남구보건소 신설에 따른 정원감축

### 나. 주요골자

- 보건소 정원 “76명”을 “61명”으로 함 <제2조제3호>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< 전문위원 박종근 >

- '98. 1. 1자 남구보건소 신설에 의한 서구보건소의 정원감축에 따른 개정조례안으로,
- 현재 보건소 정원은 76명으로 일반직 56명, 기능직 18명, 별정직 2명으로 남구지역 20개동까지 관장하여 왔으나 정원조정에 따라 그 영역을 서구관내에 한정하게 됨에 따라
-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서구주민의 욕구충족과 보건의료서비스 영역에서 “어떻게 더 많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”에 역점을 두고
- 이제 주민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크게 변화한 만큼 이에 부응하는 지역사회 보건의료 행정을 일반종합병원보다 신뢰할 수 있는 지역보건법에 의한 양질의 보건행정이 되어야 하며,
- 지역별 보건소 분리에 따른 인원조정으로 조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본 조례안의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

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

##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 제3호중 “76명”을 “61명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#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구본청·의회 사무국·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구 본 청 : 362명</li> <li>2. 의회사무국 : 20명</li> <li>3. 보 건 소 : <u>76명</u></li> <li>4. 동 : 235명</li> </ol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2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3. 보 건 소 : <u>61명</u></li> <li>4. (현행과 같음)</li> </ol>